

지도전문의 교육 실시 계획(안) 및 자격 기준

□ 지도전문의 교육 시행 계획(안) 및 자격 기준

가. 교육 대상 및 주기

구분	교육 대상	교육 주기	교육 방법	
기초 교육 (4시간)	○ 기존 지도전문의 종전 전공의법에 따라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자(지도전문의 교육 이수자)	전공의법 제2조(지도전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따라 <u>2020.1.15. 까지</u> 기초교육 을 이수하여야 함	온라인 교육	
	○ 신규 지도전문의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자	기초교육 이수 후 수련병원(기관)장으로부터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을 수 있음		
정기 교육 (8시간)	○ 기존 지도전문의 종전 규정에 따라 받은 지도전문의 교육 (최초교육·재교육)은 개정 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으로 인정됨	종전 규정에 따른 <u>최종 지도전문의 교육 수료 일지를 기준¹⁾</u> 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8시간(공통교육 4시간, 학회교육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 정기교육 교육주기 사례 참조(첨부2)	온라인 교육 또는 대면 교육	
	○ 신규 지도전문의	① 기초교육 이수 후 지도 전문의로 지정받은 자로, 지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지도전문의로 새로 지정(기초교육 이수 후) 받은 날로부터 <u>1년 이내에 정기교육(대면 교육)</u> 을 받아야함
	② 지도전문의 중 최초 정 기교육(대면)이수자	3년 (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u>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u>) 마다 8시간 (공통교육4시간 학회교육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1) 종전 지도전문의 교육(공통교육(4시간), 학회교육(4시간))에 대한 이수연도가 다를 경우, 두 교육
중 후순위로 수료한 교육의 이수 연도를 기준으로 정기교육(재교육) 시점 산정

[예시] 교육 이수 날짜별 정기교육 이수 인정일

사례	구분	최초교육 이수 날짜	정기교육 (재교육) 이수 인정일	두 번째 정기교육 (재교육) 이수기한
1	공통 교육	2016.12.26	2021.12.31. 까지	2024. 1. 1. ~ 2024. 12. 31
	학회 교육	2015.6.24		
2	공통 교육	2017.3.25	2022.12.31. 까지	2025. 1. 1. ~ 2025. 12. 31
	학회 교육	2019.6.26		

나. 종전 규정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 인정에 관한 사항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8155
- 주요 내용: 개정된 전공의법(시행: '19년 7월 16일) 이전에 교육을 하나(4시간)만 받은 지도전문의의 경우, 해당 잔여 교육을 '19년 12월 31일까지 받아 8시간 이상이 된다면 개정 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으로 인정

* 지도전문의 공통교육(대면교육)은 19년 9월 중 개최 예정(추후 공지)

다. 지도전문의 교육 시행 계획(안) (첨부#1)

① 교육 일정

○ 기초교육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대한병원협회 온라인 지도전문의 교육센터(<http://kha.hunet.co.kr>)에서 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 시행일: 2019.8.27.(화) 부터

○ 정기교육

- 교육방법: 온라인 또는 대면 교육
- 시행일

구분	시행일	비고
공통교육 (4시간)	(온라인 교육) 2019.9.9.(월) ~	대면교육 세부일정 추후 공지
학회교육 (4시간)	학회별 지도전문의 교육 일정에 따라 실시	

② 교육비

구분	온라인 교육	대면 교육
기초교육	(기존 지도전문의) 무료 (신규 지도전문의) 1만원/1인	-
정기교육	(공통교육) 1만원/1인	(공통교육) 3만원/1인

(첨부 1) 지도전문의 교육 프로그램

○ 기초교육(4시간)

구분	교육 내용 및 시간	운영기관
전공의 수련 정책 및 제도	- 전공의 수련 정책 및 제도	병원 협회
지도전문의 역할 및 책임	- 지도전문의 역할과 책임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 전공의 공통역량 과정 안내 - 전문과목별 수련교과과정 안내	
의료윤리	- 전공의 의료윤리에 관한 교육 -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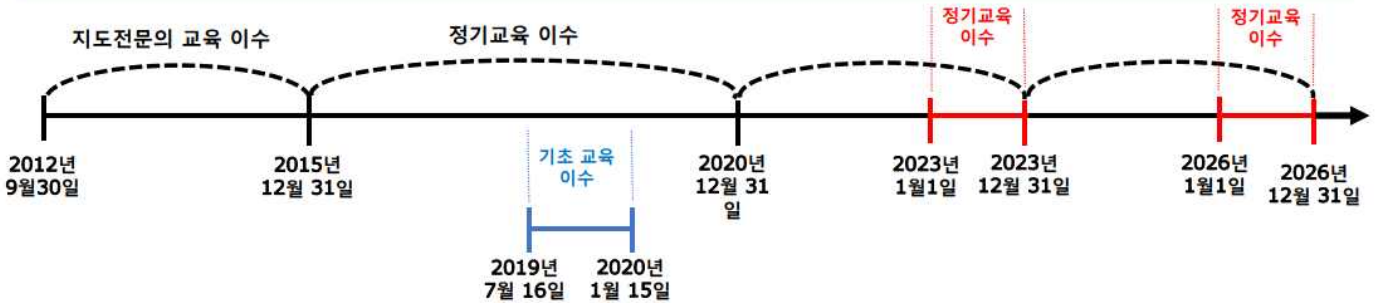
○ 정기 교육(8시간) (병원협회 교육 4시간+전문학회 교육 4시간)

구분	교안 내용 및 시간	운영기관
의료관계 법령	- 전공의 관련 법령 및 방침 등 안내	병원 협회 (공통)
전공의에 대한 지도·교육 및 평가	- 전공의에 대한 지도·교육 및 평가	
기타 전공의 관련 교육	- 전공의를 위한 환자 안전 - 전공의를 위한 의료윤리	
수련과목별 교육	- 전문과목(학회)별 교육 실시	의학회 (학회)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		

(첨부 2) 지도전문의 재교육 주기 사례별 안내

① 2012년 9월 30일 이전 지도전문의

대상자	교육 주기
2012년 9월 30일 이전 지도전문의 (수련병원(기관) 종사경력 1년 이상인 자)	<p>▶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도전문의 교육(공통·학회)을 이수한 경우 :</p> <p>2020년 12월 31일까지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후 정기교육 주기는 2021년부터 3년마다*로 함</p> <p>*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교육 이수</p>
<p>(예시) 2015년까지 최초교육 이수 → 2020년까지 재교육 이수 → 3년마다 재교육 이수 - 정기교육 이수 시점 : 2023.1.1 ~ 2023.12.31 이내 이수, 2026.1.1 ~ 2026.12.31 이내 이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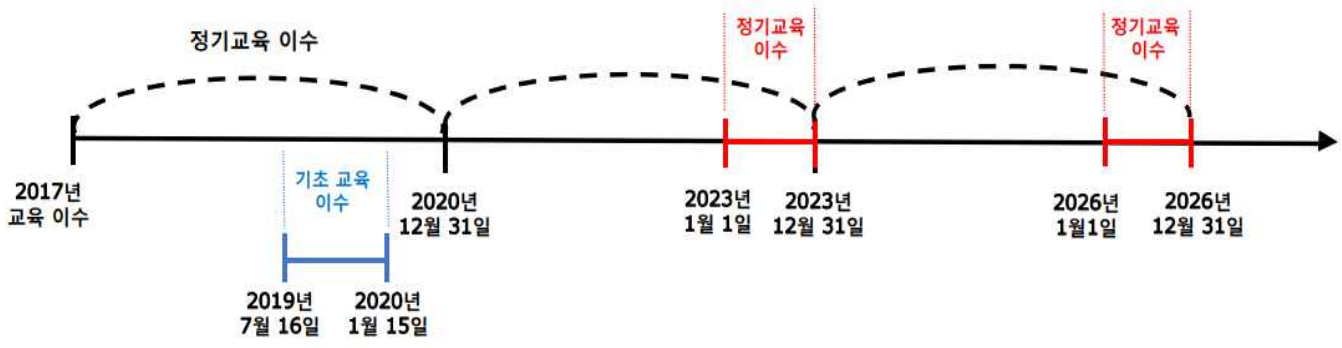
② 2012년 10월 1일 이후 지도전문의

대상자	교육 주기
2012년 10월 1일 이후 지도전문의 (해당 전문과목 수련병원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한 자)	<p>▶ 최초 교육(8시간 교육 이수 완료 시점)을 이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후 정기교육 주기는 3년마다*로 함</p> <p>*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교육 이수</p>
<p>(예시) 2013년 교육 이수 → 2018년 이내 교육 이수(5년) → 3년마다 교육 이수 - 정기교육 이수 시점 : 2021. 1. 1 ~ 2021. 12. 31 이내 이수, 2024.1.1~2024.12.31 이내 이수</p>	



③ 전공의법 시행규칙 이후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자

대상자	교육 주기
전공의법 시행규칙(2016.12.27) 이후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자	▶ 최초 교육(8시간 교육 이수 완료 시점)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로 함 *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교육 이수
(예시) 2017년 이수 → 2020년 이내 → 3년마다 이수 - 정기교육 이수시점 : 2023.1.1 ~ 2023. 12. 31 이내 이수, 2026.1.1 ~ 2026. 12.31 이내 이수	



(첨부 3) 전공의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지도전문의의 정의 (개정 법률 제2조 제3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

- 수련병원 등의 장으로부터 제12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 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

* (지도전문의 요건)

- ① 「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의
- ②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교육’을 받았을 것
 - 단, 기존 지도전문의²⁾는 법 시행(‘19. 7. 16) 후 6개월 이내에 기초교육을 받아야 하며, 종전 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은 정기교육으로 봄³⁾

※ 개정된 전공의법(시행:‘19년 7월 16일)이전에 교육을 하나(4시간)만 받은 지도전문의의 경우에는 해당 잔여 교육을 ‘19년 12월 31일까지 받아 8시간 이상이 된다면 개정 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으로 인정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8155)

○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개정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자 : 기초교육 (4시간)
 - 기초교육 이수 후 새로 지정된 지도전문의 : 정기교육 (8시간*)
- * 기초교육 이수 후 지도전문의 새로 지정된 경우 1년 이내 정기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정기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2) 종전의 법령에 따라 지도전문의로 지정되어 지도전문의 교육(공통교육 4시간, 전문 과목 학회별교육 4시간)을 이수한 자

3) 개정된 전공의법(시행:‘19년 7월 16일) 이전에 교육을 하나(4시간)만 받은 지도전문의의 경우, 해당 잔여 교육을 ‘19년 12월 31일까지 받아 8시간 이상이 된다면 개정 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으로 인정함

○ 지도전문의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전공의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구 분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기초교육 (4시간)	1) 지도전문의의 역할 및 책임 2) 의료윤리 3) 전공의 수련 정책 4)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	대면 또는 온라인 (단, 기초교육 이수 후 최초의 정기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정기교육 (8시간)	1) 수련과목별 교육내용 2) 의료관계 법령 3)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 4) 전공의에 대한 지도·교육 및 평가 5) 그 밖에 전공의 지도·교육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도전문의 교육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의료인력정책과, 2021.3.29.)

① 기초교육을 미이수한 기존 지도전문의의 과거 교육이수 이력 인정 여부

<질의내용>

-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도전문의에 대해 경과규정으로 기초 교육을 이수(기한 '20.1.15)토록 하였으나, 이수기한 이후 기초교육을 완료한 기존 지도전문의 및 미이수한 기존 지도전문의의 과거 교육 이력 인정 여부

<회신내용>

- 경과규정으로 기초교육을 '20.1.15.까지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기한을 '20년 9월 말까지 연장하여 동 기한 내 이수한 경우는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였음. 그러나 연장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20년 9월 말 후에 기초교육을 완료하거나,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기초교육을 미이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거 정기교육 이수이력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

② 정기교육 이수기한 미준수 지도전문의의 교육이수 이력 인정 여부

〈질의내용〉

- 지도전문의가 정기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거 교육 이수 이력이 상실되어 기초교육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초교육을 제외하고 미이수한 교육만 이수할 경우 자격 유지가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도전문의가 정기교육을 이수기한 내 미이수할 경우 과거 기초교육 이수 이력이 상실된다는 근거 규정 부재
 - 따라서, 이수한 기초교육 이력은 인정되며, 정기교육 이수기한을 3개월 연장하여 기간 내 이수하도록 함
 - 다만, 연장한 기한 내에도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지도전문의는 정원책정지도전문의로의 자격을 상실하며, 정원책정지도전문의로 자격을 다시 회복하고자 할 경우 지도전문의로 처음 지정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정기교육을 대면교육으로 받도록 함

③ 이직한 지도전문의의 과거 교육이수 이력 인정 여부

<질의내용>

- 지도전문의가 이직한 병원에서 지도전문의로 지정되는 경우 과거 지도전문의의 교육 이수 이력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기초교육과 정기교육은 개인이 이수한 교육이므로, 이직하더라도 과거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 이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④ 지도전문의 교육(기초↔정기) 이수 순서 변경에 따른 교육이수 이력 인정 여부

<질의내용>

- 정기교육은 기초교육 이수한 자를 수련병원등의 장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하나(신규), 정기교육을 먼저 받고 기초교육을 받은 자의 교육 이수 이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정기교육은 지도전문의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들어야 한다는 기한을 둔 점을 고려하여, 기초교육을 이수하여 지도전문의로 지정되고 그 후에 정기교육을 들어야 함이 타당

대한의학회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KAMS)

수신 26개 전문과목학회 회장/이사장 귀하
참조
제목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이수 관련 유권해석 안내

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632(2022.3.4) 관련입니다.
3.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이수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 내용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지도전문의는 3년마다 8시간의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다만, **해외연수 중인 지도전문의의 경우** 정기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복귀 후 1년까지 정기교육 이수기한을 유예**하고, 유예기간동안은 정원책정지도전문의 자격을 유지함(단, 1년 이하의 해외연수에 한해 적용하며, '22년도 정기교육 이수 대상자부터 적용함).

끝.

대한의학회



수신처

대리 **장용태** 팀장 김정은 사무국장 최영학 수련교육 이사 이승구 부회장 박중신 회장 06/13 정지태

시행 대의학 제2022-312호 (2022. 6. 13.)

접수

우 06762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8(우면동) DK빌딩 5층 대한의학회 수련·평가센터

<http://www.kams.or.kr>

전화 02-6952-9518

팩스 0502-798-3807

GME@kams.or.kr